

대구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316163 판결 [건물명도]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31616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1522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4. 2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152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층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C호 28.5㎡를 인도하고, 2022. 11.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주장까지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진, 판사 정주희, 판사 김아영

별지

1) 피고의 주장 취지를 고려하여, 항소취지를 이처럼 선택한다.